

전주지방법원 2020. 11. 5 선고 2020가합478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

담당변호사 온성욱, 정제훈, 추길환

피고유한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1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[별지 2]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2019. 11. 27. 접수 제115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1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위 기재 중 '별지 목록'은 [별지 2] 부동산 목록과 같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재판장판사최치봉

판사박정련

판사신태광

별지